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9.04.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④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⑤ 본 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4조 (임기)

-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 지원)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